#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5

발의연월일: 2021. 1. 29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영주·문진석

변재일 • 유정주 • 이규민

이병훈 · 이상헌 · 이재정

임오경 · 전용기 · 조승래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, 우리나라의 "역사문화권"을 고구려역사문화권, 백제역사문화권, 신라역사문화권, 가야역사문화권, 마한역사문화권,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발굴·복원을 통해 그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충북·강원·경북 일부 지역에 분 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,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는 독특 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"중원역사문화권"이 누락되어 있음. 중원문 화권은 「국토기본법」에 의거 1981년부터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온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이며,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연구와 보 존관리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문 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음.

그동안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」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등에 의하여 정책적지원을 받아 왔으나, 중원역사문화권은 위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.

또한, 현행법에 따르면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화와 균형을 꾀하도록 되어 있으나, 위 법률들에 따라 각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본 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충북,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 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·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중원역사문화권: 충북, 강원,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· 백제·신라 시대의 유적·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	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
등에 관한 특별법	등에 관한 특별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역사문화권"이란 역사적으	1
로 중요한 유형·무형 유산	
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	
유한 정체성을 형성·발전시	
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	
록과 유적・유물을 통해 밝	
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	
말한다.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사. 중원역사문화권: 충북, 강
	원,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
	고구려 · 백제 · 신라 시대
	의 유적・유물이 분포되어
	<u>있는 지역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